

기안용지

(전화번호 75-6379)

전 결 규정 조 항
전 결 사 항

행정명

분류기호	법무 181.4-817	(전화번호 75-6379)	전 결 규정 조 항
문서번호			전 결 사 항
처리기관		시	장
시행일자	81. 4.		결재 1981. 4. 09 시장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7부시장 기획예산처 법무담당관	법제계장	협 예산담당관
기안책임자	이상돈	81. 4	
경유	각안참조		검열 1981. 4. 09 사무총장 공무부
수신			
참조			
제 목	서울특별시 합숙생활지도 및 편집편찬수당 지급 규정중 개정규정 (제1안) 내부 결재		
	1. 서교 181-750 (81.3.19)와 관련입니다.		
	2.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합숙생활지도 수당 및 편집편찬수당 규정이 81.1.5.(대통령령 제10137호)부로 개정되어 당시 공무원 교육원의 관계 수당 조문을 별첨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 부	1. 개정이유서 1부		
	2. 주요 골 자 1부		
	3. 개 정 안 1부		
	4. 조 문 대 비 표 1부		
	5. 예산개요 및 산출근거 1부		
	6. 관공법령 발췌문 1부. 끝.		
(제2안)			
수신	문화공보관		
제 목	서보 게재		

별첨 서울특별시 합숙 생활지도 및 편집 편찬수당 지급 규정중 개정

규정을 시보에 게재 발령할 것.

첨 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 끝.

(제3안)

수신 :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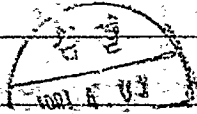
제목 : 훈령 발령

서울특별시 합숙 생활지도 및 편집 편찬수당 지급 규정중 개정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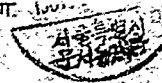
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첨 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 끝.

10-2



개 정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의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10137호, 8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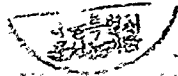
되어 합숙생활지도 수당과 편집·편찬 수당액이 인상됨에 따라

당시 공무원 고육원의 합숙생활지도 및 편집·편찬 수당 지급액을

인상 조정함.

주 요 내 용

1. 합숙생활 지도수당 1일당 1,500원을 2,900원으로 인상
2. 편집·편찬수당 1일당 1,500원을 4,000원으로 인상
3. 일부 근거 규정의 변경
4.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



서울특별시 합숙 생활지도 및 편입면찬수당 지급규정중 개정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1981 년 4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영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합숙 생활지도 및 편집편찬수당 지급 규정 중 개정 규정시장

서울특별시합숙 생활지도 및 편집편찬수당 지급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로 하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1,5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새마을교육"을 "합숙 교육"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새마을교육"을 "합숙 교육"으로 한다.

제9조 중 "1,500원"을 "4,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 본 데 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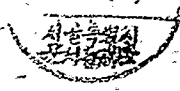
현	개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수당 규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4조의2 및 제4조의 3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숙생활 지도수당 및 편집·편찬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p>
<p>제2조 (지급액) 합숙생활지도 수당은 1일당 1,500원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이 연산, 업무의 성질, 난이도, 기탁 실정을 감안하여 1,500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2조 (지급액) 1일당 2,000원 2,000원 이하의</p>
<p>제3조 (지급범위) 새마을교육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소속 일반직 공무원 및 겸직직 공무원으로서 새마을 교육기관중 합숙생활을 지도하면서 다음각항의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합숙생활 지도수당을 지급한다.</p>	<p>제3조 (지급범위) 합숙교육을 합숙교육기관중</p>
<p>1. 4 - 생략 -</p>	<p>현행과 같음</p>

<p>제5조 (행정사항) (1) 교육원장은 <u>새</u> <u>마을 교육 개시전에 합숙생활 지도</u> <u>를 담당할 공무원에 대하여 일일</u> <u>근무시간 지도 및 지원할 업무등</u> <u>을 지정하여 합숙생활지도 근무</u> <u>명령을 하여야 한다.</u></p> <p>(2) - 생략 -</p> <p>제9조 (지급액) 수당은 1일당 <u>1,500원</u>을 지급한다.</p>	<p>제5조 (행정사항) (1) ----- <u>합숙교육</u> ----- <u>시장</u> ----- (2) - 현행과 같음 - 제9조 (지급액) ----- <u>4,000원</u> -----</p>
-----------------------------------------------------------------------------------------------------------------------------------------------------------------------------------------------------------------------------------------------------------	------------------------------------------------------------------------------------------------------------------------------------------------

예산 개요 및 산출 근거

예산과목			예산액		개정요구액		증(감)액
관	항목	예산액	산출근거	예산액	산출근거		
행정비	1140 1141 105	13,868,600		13,984,000		5,015,400	
	교육훈련 공무원교육원 정액수당	12,621,000	0. 야간합숙 생활지도수당 일반 : $1,500 \times 38 \times 7 \times 31 = 12,369,000$ 소방 : $1,500 \times 2 \times 28 \times 3 = 252,000$	13,828,000	0. 야간합숙 생활지도수당 일반 : $2,000 \times 38 \times 7 \times 31 = 16,492,000$ 소방 : $2,000 \times 2 \times 28 \times 3 = 336,000$	4,207,000	
		1,347,600	0. 편집편찬수당 공채 : $2,500 \times 10 \times 4 \times 7 = 700,000$ 승진 : $2,500 \times 6 \times 2 \times 7 = 210,000$ 특진전직 : $2,500 \times 5 \times 7 \times 5 = 437,600$	2,156,000	0. 편집편찬수당 공채 : $4,000 \times 10 \times 4 \times 7 = 1,120,000$ 승진 : $4,000 \times 6 \times 2 \times 7 = 336,000$ 특진전직 : $4,000 \times 5 \times 7 \times 5 = 700,000$	808,400	

관 계 법 령 발 체 문



1.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4조의2 (합숙생활지도수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기간중 정규 근무시간에 피고용자의 합숙생활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당 2,000원 이하의 합숙생활 지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81.1.5.대령 10137)

제4조의3 (편집·편찬수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험문제의 편집·편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당 4,000원 이하의 편집·편찬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81.1.5.대령 10137)

2. 공무원 수당 규정

제17조의4 (합숙생활 지도수당) (1) 각급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기간중 정규 근무시간의에 피고용자의 합숙생활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당 2,000원 이하의 합숙 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80.12.31.대령 101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교육청사 기관의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3)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및 각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합숙생활지도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합숙 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5 (편집·편찬수당) (1) 각급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의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시험 문제의 편집·편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일당 4,000원 이하의 편집·편찬수당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3)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있어서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상태에서 문제의 편집 및 편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편집·편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대통령령) 및 소방공무원 수당규정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임상연구비 지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0.1.19 조례 1392)

제2조 (수당지급액) (1) 지학철본부 연업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조정수당 지급액 및 지급대상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하고 의무직 공무원의 조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의 일반직 공무원 조정수당액과 동액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수당을 제외한 기타 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및 지방소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정한 지급액의 상한액까지 지급할 수 있다.

(3) - 생략 -